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교 원 의 노 동 조 합 설 립 및 운 영
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재갑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

3. 주요내용

가. 교섭 요구 및 사립학교의 교섭단 구성(안 제3조)

- 1)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교섭요구사항,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국·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
- 2) 초·중등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는 교섭예정일 이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

나.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등(안 제3조의2)

- 1)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상대방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- 2) 교섭 요구 기간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

거부할 수 있도록 함

다. 교섭 위원회 선임(안 제3조의3)

- 1)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최대 10인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자율로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함
- 2) 자율적으로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 비례로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함

라. 교섭 위원회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(안 제3조의4)

- 1)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확인 기준, 방법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전자 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
- 2) 조합원 중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수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함
- 3)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10일 이내에 확인·통보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(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”를 “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(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‘상대방’이라 한다)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교섭요구사항,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”를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”를 “제3조2제3항에

다른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(이하 "교섭노동조합"이라 한다)의 공고가 있는 경우(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때에는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)"으로, "교섭 내용, 교섭 위원 수, 교섭 일시 및 장소,"를 "교섭 내용, 교섭 일시 및 장소,"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등)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상대방이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(이하 "교섭노동조합"이라 한다)을 공고하고,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④ 상대방은 제3조제1항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.

제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교섭위원의 선임)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10명 이내가 되도록

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,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교섭노동조합별로 교섭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.

③ 교섭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라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)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섭위원을 신속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기준, 방법 등을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교섭노동조합의 각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산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교섭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
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.

1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: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

2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: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

④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해 교섭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당해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4항”을 “법 제6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섭절차)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<u>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(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	제3조(교섭절차) ① ----- ----- <u>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, 국·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(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'상대방'이라 한다)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교섭요구사항,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u>
②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는 <u>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전국 또는 시·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 <u>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</u>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③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, 교섭 위원 수, 교섭 일시 및 장소,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.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	③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(이하 "교섭노동조합"이라 한다)의 공고가 있는 경우(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때에는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)----- ----- -----교섭 내용, 교섭 일시 및 장소,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제3조의2(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등)</u>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상대방이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③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을 공고하고,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상대방은 제3조제1항과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3(교섭위원의 선임)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,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교섭노동조합별로 교섭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교섭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라 각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4(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)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섭위원을 신속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기준, 방법 등을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
	<u>② 교섭노동조합의 각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산정한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교섭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	3. <u>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: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</u> 4. <u>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: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</u> ④ <u>제2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해 교섭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명단을 요청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당해 노동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 <u>섭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대한</u> <u>이견이 있거나 제3조의3제3항에</u> <u>따른 기간 안에 교섭위원을 선임</u> <u>하지 못한 경우 교섭노동조합은</u> <u>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조합</u> <u>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</u> <u>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</u> <u>게 조합원 수 확인을 신청할 수</u> <u>있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</u> <u>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</u>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</u> <u>부터 10일 이내에 각 조합원 수</u> <u>를 확인하여 교섭노동조합에 알</u> <u>려야 한다.</u>
제4조(국민여론 등 의견수렴)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<u>법 제6조제4항</u> 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 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 다. ② (생 략)	제4조(국민여론 등 의견수렴)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<u>법 제6조제8항</u> 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 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 다.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656